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의2(정의) “유휴면적”이란 국내 기존 사업장 내 제조시설의 추가 설치가 가능한 연접한 공간으로서 생산활동에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곳을 말한다.	제1조의2(정의) ---------- ---------- ---------- 공간---------- ---------- ----------.
제3조(제품 또는 서비스 등의 유사성 판단)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에 신설·증설된 사업장과 해외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같거나 유사한 제품 또는 서비스라고 인정할 수 있다. 이 때, 심의·의결에 필요한 심사는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3조(제품 또는 서비스 등의 유사성 판단) ---------- ---------- ---------- ---------- ---------- ----------. ---------- ---------- ---------- ----------.
1. 심사 대상 제품 또는 서비스를 결합·조립·투입하여 생산하는 최종 제품 또는 서비스 등이 동일·유사한 산업영역에 속하는 경우	1. ---------- 결합·조립·가공·투입하여 ----------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심사 대상 제품 또는 서비스 등	3. ----------

현 행	개 정 안
의 최종 사용 기능 또는 사용 목적이 동일·유사한 경우	주된 ----------
<신 설>	4. 심사 대상 제품 또는 서비스 등의 설계 또는 제조 등에 활용되는 핵심적인 기술(제품등의 성능, 품질, 생산성 또는 안전성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설계기술, 제조공정기술, 시험·검사기술 등을 말한다)이 동일·유사한 경우
<신 설>	제5조의2(핵심제조시설의 인정기준)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4조의2에 따른 국내복귀기업 지원 관련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하 한다)의 자문을 거쳐 사업장이 영 제3조의2제1호 각 목의 제품등과 관련된 생산기술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기능을 통하여 국내 또는 국외 생산거점에 대해 기술, 생산 또는 품질을 관리하는 경우 영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사업장(이하 “핵심제조시설”이라 한다)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제품의 생산성·품질·안전성 또는 제조효율 향상을 위한 생산기술의 연구개발 및 검증
	2. 생산기술의 검증, 양산 적용성 확

현 행	개 정 안
	인 또는 생산공정의 안정화를 위한 시험제품의 제작 및 실증생산 3. 생산기술의 표준공정, 작업방법, 시험·검사기준, 품질기준 또는 기술기준을 수립·관리 ② 기업은 핵심제조시설로서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신청하거나 국내복귀 이행결과를 제출할 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서식에 제1항의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제1호의 서류,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중 하나 이상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류 중 하나 이상을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3조의2제1호 각 목의 제품 등과 관련된 생산기술에 관한 자료(투자사업장 기술·제품 설명서 등) 2. 생산기술 연구개발 수행에 관한 자료(연구개발 인력, 장비 등이 포함된 계획 또는 실적 등) 3. 시험제품 실증생산 수행에 관한 자료(시험제품 실증생산 관련 인력, 장비 등이 포함된 계획 또는 실적 등) 4. 생산기술 표준화 수행에 관한 자

현 행	개 정 안
	료(표준화 인력 등이 포함된 계획 또는 실적 등) 5. 국내 또는 국외 생산거점에 대해 기술을 관리하는 자료(생산거점현황, 기술이전, 기술교육, 기술지원 등이 포함된 계획 또는 실적 등) 6. 국내 또는 국외 생산거점에 대해 생산을 관리하는 자료(생산거점현황, 생산계획 관리, 생산량 조정, 생산공정 관리 등이 포함된 계획 또는 실적 등) 7. 국내 또는 국외 생산거점에 대해 품질을 관리하는 자료(생산거점현황, 품질기준 설정, 품질평가, 품질교육 등이 포함된 계획 또는 실적 등) ③ 자문위원회는 제14조의3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제1항의 요건 충족 여부를 자문할 수 있다.
제9조(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요건)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3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사업장의 국내 신설·증설을 인정받고자 하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제9조(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요건) ① (현행과 같음) ② ----------

현 행	개 정 안
충족하여야 한다. 1. 별표에 따라 확정된 기존 국내사업장 유휴면적 내에 제조시설의 설치를 계획하였을 것 2. (생 략) ③ (생 략) <신 설>	----------. 1. 기존 ---------- ---------- ---------- 2.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의2(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영 제5조의4에 따라 국내복귀기업의 선정·취소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하기 위해 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산업통상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국내복귀기업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산업·투자·금융 또는 국내복귀기업 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임

현 행	개 정 안
	직원 중 사장이 추천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준용한다. ⑦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⑧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지명이 없을 경우에는 위원 중 선임자가 대행한다. ⑨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자문의견을 정한다. ⑩ 회의 소집이 어렵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및 자문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서면의결 등의 방법으로 회의를 대체할 수 있다. ⑪ 자문위원회의 회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산업통상부 해외투자과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4조의3(전문위원회) ① 국내복귀기업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산업별 전문위원회를 둔다. 1. 제3조의 제품 또는 서비스 등의 유사성 판단에 관한 사항 2. 제5조의2 핵심제조시설 인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회의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② 각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전문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각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각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소관 산업별 부서의 4급 또는 4급 상당 공무원으로서 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는 자 2. 소관 산업별로 산업기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⑤ 각 전문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현 행	개 정 안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전문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2 및 영 제5조의3을 준용한다. ⑦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 외에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별표] 유휴면적의 인정범위(제9조제2항제1호 관련)	<삭 제>